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07
----------	-------

발의연월일 : 2026. 4. 29.

발 의 자 : 김예지 · 정성국 · 박덕흠  
이수진 · 유용원 · 손 솔  
이종배 · 김소희 · 고동진  
안철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출판물은 지식·정보·문화를 전달하는 핵심 매체로서 국민의 지적·문화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그러나 장애인은 점자, 음성, 화면해설 등 접근 가능한 형태의 출판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판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제8조의3 신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물에 접근하거나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에 관한 사항

제2장에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국가는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p> <p>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8.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9. (생략)</p> <p>③ · ④ (생략)</p> <p><u>&lt;신 설&gt;</u></p>	<p>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u></p> <p>10. <u>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물에 접근하거나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에 관한 사항</u></p> <p>11. (현행 제9호와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3(<u>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u>) 국가는 <u>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